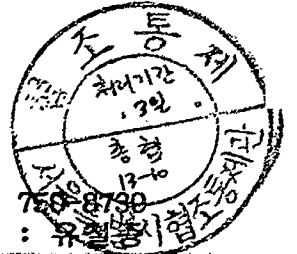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750-8716-7/ 전송 750-8730
 처리부서 : 주택개발과(중구 서소문동 서소문 별관2층)담당 : 유철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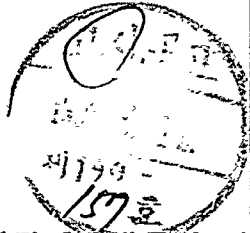
문서번호 주개 58531-1336

시행일자 1996. 6. 12.

(경유) (계 1 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법무담당관 심사필
주택개발과장		
개발 2 계장	<i>(Handwritten initials)</i>	
기안	유철중	
		협조

제목 수유제2 주택개발재개발구역 사업계획변경결정

1. 건설교통부고시 제305호('95.11.11)로 구역지정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호('96.2.3)로 사업계획결정된 수유제2 주택개발재개발구역에 대하여 강북구청장으로부터 건축계획변경(임대아파트 배치조정 등)요청이 있어

2. 도시재개발법 제5조(재개발사업계획의 입안및 결정), 제64조(특례)와 같은법 시행령 제58조(권한의 위임)제1항제3호 및 제56조(특례)제6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변경결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고시)의 규정에 따라 별첨(고시안)과 같이 고시하고자 하오니 재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고시(안) 1부.

2. 사업계획변경결정 도서 1부. 끝.

(제 2 안)

수신 총무처장관

제목 관보게재의뢰

1. 우리시 수유제2 주택개발재개발구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관보게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게재구분 : 고시

나. 게재건명 : 수유제2 주택개발재개발구역 사업계획변경결정

다. 법규근거 : 도시재개발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58조.

첨부 : 고시문 사본 2부. 끝.

서울특별시 장



(제 3 안)

수신 건설교통부장관

참조 주택관리과장

제목 수유제2 주택개량제개발구역 사업계획변경결정

1. 건설교통부고시 제305호('95.11.11)로 구역지정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호('96.2.3)로 사업계획결정된 수유제2 주택개량제개발구역에 대하여

2. 도시재개발법 제5조, 제6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58조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결정하고 그 처리내용을 보고합니다.

첨부 : 1. 고시문 사본 1부.

2. 사업계획변경결정 도서 1부. 끝.

서울특별시장

(제 4 안)

수신 강북구청장

참조 주택과장

제목 수유제2 주택개량제개발구역 사업계획변경결정 통보

1. 주택 58531-1623호('96.6.3)와 관련입니다.

2. 위 공문번호로 사업계획변경결정 요청한 수유제2 주택개량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변경결정하였기 그 내용을 통보하니

3.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증명발급 등 도시계획관련 업무와 동 재개발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첨부 : 1. 고시문 사본 1부.

2. 사업계획변경결정 도서 1부. 끝.

서울특별시장

(제 5 안)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수유제2 주택개량제개발구역 사업계획변경결정 통보

1. 수유제2 주택개량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변경결정 하였기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고시문 사본 1부.

2. 사업계획변경결정 도서 1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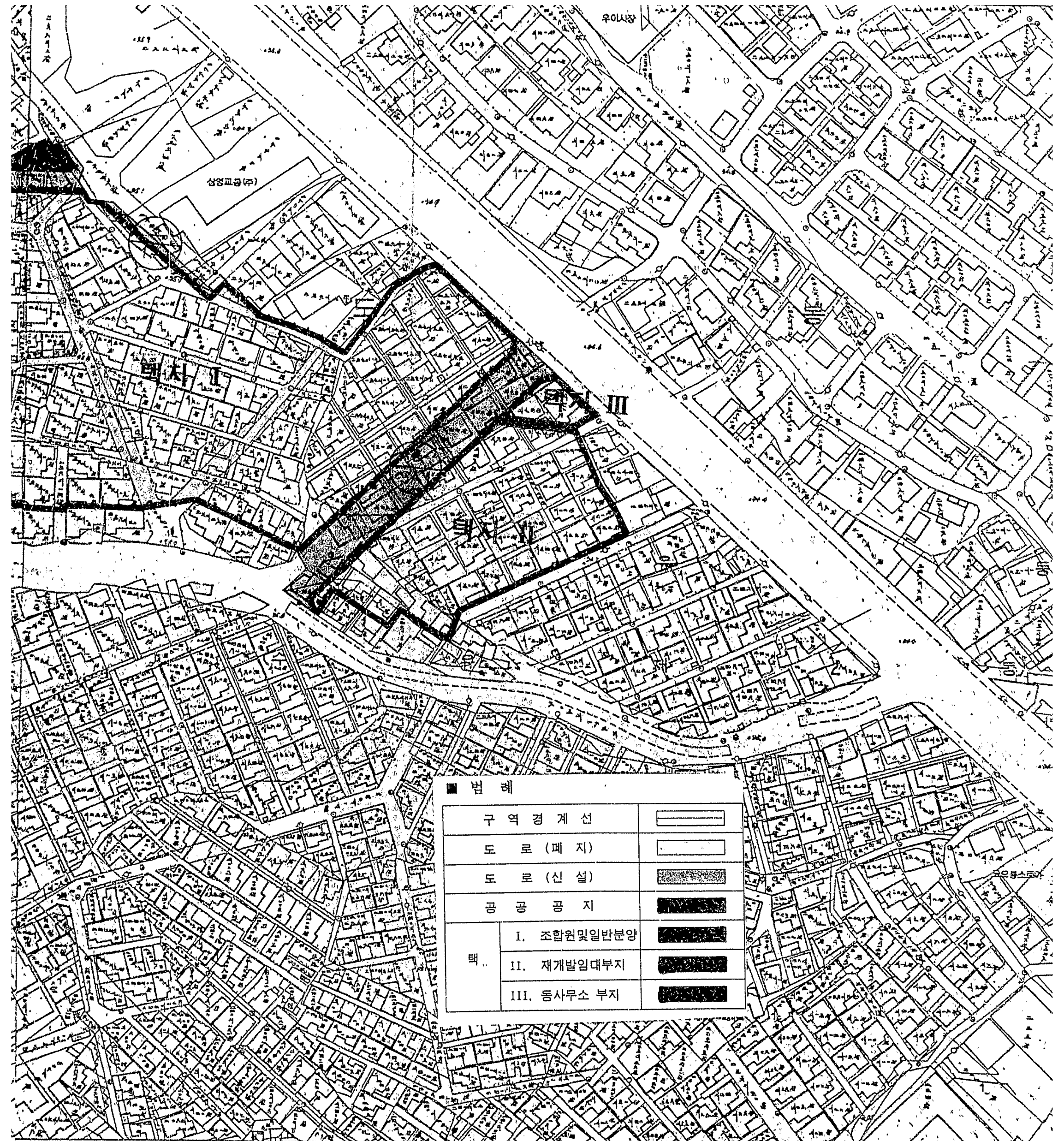
주 택 개 량 과 장

수신처 : 도시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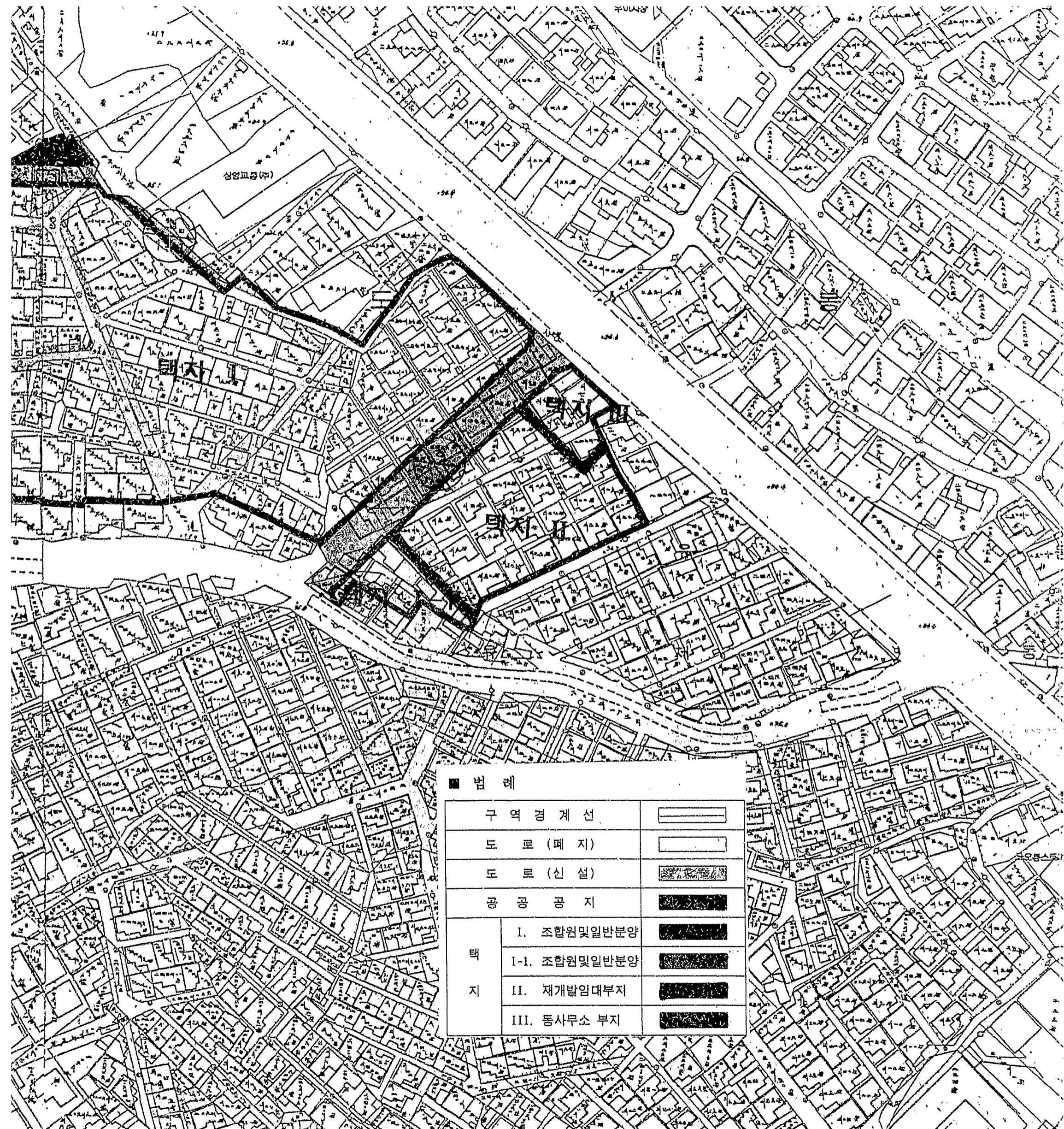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시설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지		건축 구분	건폐율	용적율	층 수	용도구성	비고
	구분	면적(㎡)						
당초	택지 1	20,944.58	신축	24%이하	265%이하	18층이하	공동주택(조합원 및 일반분양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변경		20,944.58						
신설	택지 1-1	736.46	신축	24%이하	265%이하	18층이하	공동주택 부대 복리시설(주민 운동시설)	
당초	택지 2	4,457.15	신축	24%이하	265%이하	18층이하	공동주택(공공 임대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변경		3,494.13						
당초	택지 3	434.6	신축	건축 13층 이하			동사무소	
변경		661.16						









■ 범례

구역경계선		
도로 (폐지)		
도로 (신설)		
공공공지		
택지	I. 조합원및일반분양	
	I-1. 조합원및일반분양	
	II. 재개발임대부지	
	III. 동사무소 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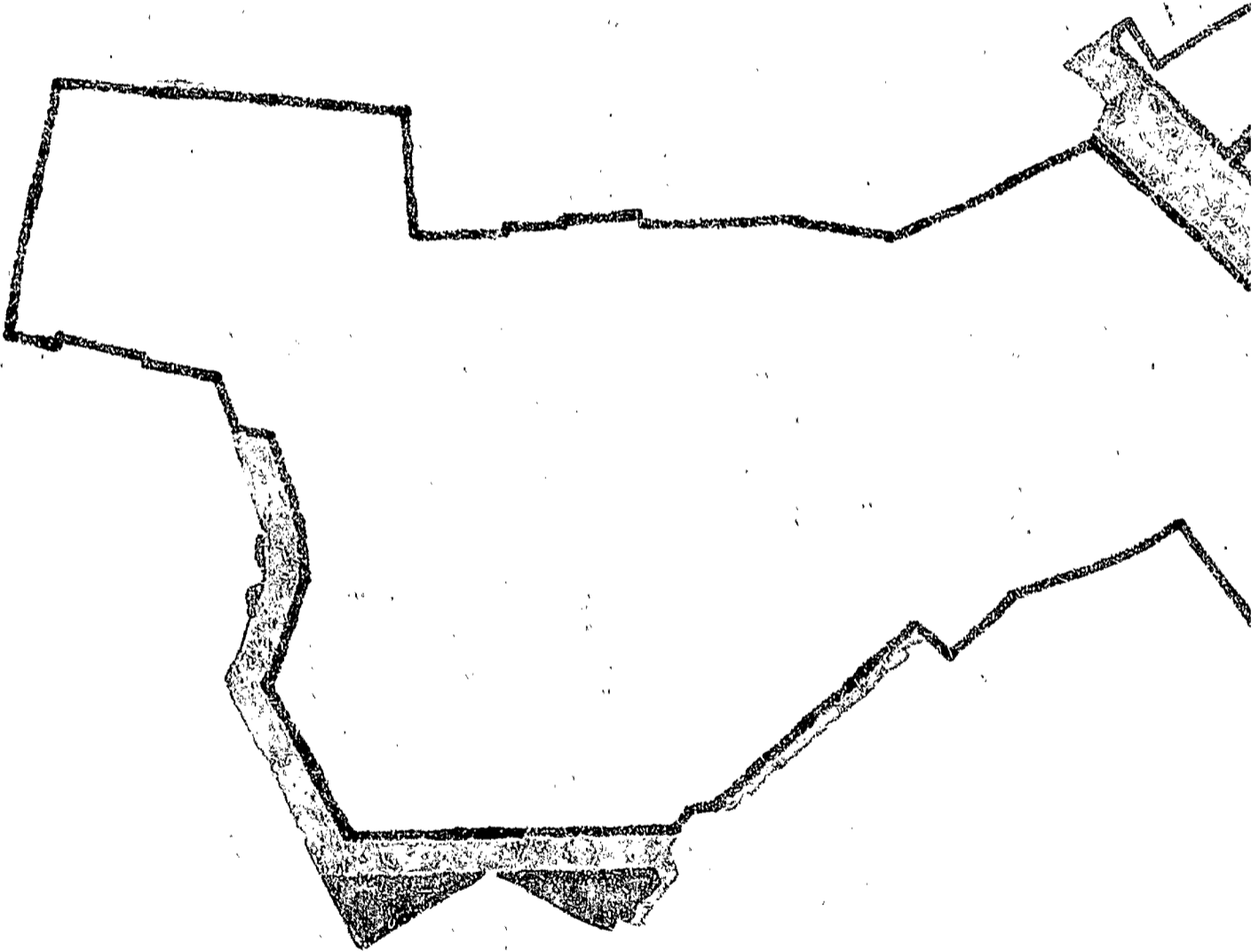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고시 제/996-157 호
1996년 6월 12일

목도면은 신규지정 및 변경

김영환

092C

사업계획결정도(변경후)



관련도면은

문서번호

A - 1996 - 57 에 있음

강 북 구

우132-073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192-59/전화(02)901-6380~3/전송907-3557/담당 박장용

문서번호 주택 58531-1629
 시행일자 1996. 6. 3.
 수신 서울특별시
 참조 주택개량과장

선결	<i>[Handwritten Signature]</i>		지		
접	일자 시간	1996. 6. 03	시		
수	번호	2894	결	과 장	<i>[Handwritten Signature]</i>
처	리 과		재	계 장	
담	당 자		공	계	
			람		

제목 주택개량재개발 수유제2구역 사업계획변경요청에 대한 보완서류 제출

1. 주개 58531-1220('96.5.2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우리구 수유제2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적변경승인 및 사업계획변경 결정 요청서의 보완지시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보완하여 제출합니다.
- 첨부 : 1) 수유제2구역 사업계획변경결정 신청서 1부.
 2) 건축개요 1부.
 3) 건축심의 관련 공문서 사본 1부. 끝.(담당 주택과 박장용)

강 북 구 청



[Handwritten Signature]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750-8716-7 / 전송 750-8730
처리부서:주택개발과(중구 서소문동 서소문별관 2층) 담당: 유철종

문서번호 주개 58531 - 1220

시행일자 1996. 5. 29.

(경유)

수신 강북구청장 /

참조 주택과장 /

취급		시 장
보존		
주택개발과장	전결	
개발 2 계장		
기안	유철종	협조

제목 주택개발재개발구역 지적변경승인, 사업계획변경결정 요청에 대한 (보완통보)

1. 귀구 주택58531-1484호(96.5.21)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 귀구 수유제2주택개발재개발구역 지적변경승인 및 사업계획변경결정 요청서를 검토한바, 아래 사항이 미비하여 통보하니 조속히 보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적변경승인 요청사항은 검토한바 변경부분이 없는것으로 판단되므로 재검토하시기 바라며,

나. 임대주택단지에서 분할하여 신설되는 택지(1-1)가 배치도상에는 운동시설로 계획되어 있으나 사업계획변경결정조사상에는 아파트(18층이하, 용적을 265%이하)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이에대한 재검토 및 택지(1), (2)에 대한 구체적인 건축개요 제출 할것.

다. 사업계획결정당시 건축계획과 사업계획변경결정 요청서상 건축계획(배치도상)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 사유(건축심의 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일경우 심의관련 공문서 사본 제출요). 끝.



서울특별시 장

강 북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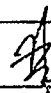
우-132-073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192-59/전화(02)901-6380~3/전송907-3557/담당 김재기

문서번호 주택 58531-1484

시행일자 1996. 5.
 (경유) 1996. 5. 21

수신 서울특별시장

참조 주택개량과장

선결			지시		
접	일자 시간	96.5.21	결	과장	
수	번호	26P2		계장	
처리과			공	계	
담당자				람	

제목 주택개량재개발 수유제2구역 지적변경승인 및 사업계획변경 결정 요청

1.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개량재개발 수유제2구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지적변경승인 및 사업계획변경결정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공임대주택단지 축소로 인한 계획면적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증 · 감	비 고
조합원·일반분양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부지	20,944.58㎡	20,944.58㎡	0	택지 I
조합원·일반분양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부지	0	736.46㎡	증 736.46㎡	택지 I-1 (신설)
공공임대아파트 부지	4,457.15㎡	3,494.13㎡	감 963.02㎡	택지 II
공공시설 (동사무소)부지	434.60㎡	661.16㎡	증 226.56㎡	택지 III

나. 지구계 변경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적선형 변경

- 당초 지적고시 당시 1필지에 대하여 지적선 오류기로 인한 정정

첨부 : 사업계획변경결정 조서 1부. 끝.(담당 주택과 김재기)

강 북 구 청

096

